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49호
2. 발 의 자 : 김수규 의원외 12명
3. 발의일자 : 2019. 8. 7.
4. 회부일자 : 2019. 8. 13.

II . 제안이유

- 교육의 기회균등과 유능한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장학제도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리체계 없이 운영되어 중복 수혜, 임의 추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장학생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2.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추천·선발, 선발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감, 교육

장 및 학교장이 가지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장학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4. 외부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특별장학금의 지급 중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5. 학교장이 장학금의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하여 장학생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6.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장학생 추천·선발 및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장학금규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기 타

입법예고(2019. 8. 19.~ 8. 26):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김수규 의원외 12명의 의원에게 의해 의안 번호 제849호로 발의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장학생 현황과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28조와¹⁾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중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을(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함)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규칙에는 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금전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기부·기탁하고, 추천 등에 따라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이하 ‘외부장학금’)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외부장학금이 단위 학교급별로 지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 수혜 인원과 추천·선발 과정, 장학금 지급액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

1)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장학생의 경우 구체적 기준 없이 임의로 추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일부학교에서는 업무가중 등으로 장학생 추천 등의 장학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²⁾

- 따라서 동 조례안이 특별장학금과 외부장학금에 대해 장학생 추천·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 장학생 명부 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은 장학금 지급 업무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책무의(안 제1조부터 제3조) 총칙 규정과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외부장학생 및 특별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 특별장학금의 지급 또는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와 제10조), 장학생 명부 작성·관리(안 제11조) 등 본칙 규정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장학생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는 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장학생은 물론 외부장학생 추천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대체할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외부장학금 대상자에 대한 추천에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이 미치지 못한 입법공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2011.11)에 대해서 [붙임] 참고.

- 다음으로 안 제7조(특별장학생 선발 기준)의 특별장학생의 선발 기준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7조는 특별장학생의 선발 기준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지니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 자연과학, 예술, 체육 등에 재능이 뛰어나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7조제1호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지니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의 학업성취도만을 기준으로 한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 안 제7조가 특별장학생 선발 기준을 현행 규칙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보다 많은 학생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11조(장학생 명부 작성·관리 등)는 장학생 명부의 작성·관리와 학교장의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교육장 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입법적 불비로 인해 외부장학금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 그 밖에 동 조례안은 조문별 구성 체계와 상위법령과의 입법체계 등에 있어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019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행정안전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학생 선정 및 심사의 공정성 제고

1-1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및 절차규정 마련

【 문제점 】

장학생 선정 및 추천 관련 세부기준 미비

- 특별장학금은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해야함에도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별장학금의 제도적 취지와 달리 가정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만을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 ○○고등학교는 부모의 월 소득이 530만원이상인 학생을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특별장학생으로 선발 ('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등학교는 동일 학교 교사 자녀인 이○○학생을 전교 1등이라는 이유로 '11년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 ('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교육지원청은 '10년 35명 중 34명, '11년 37명 중 35명을 전교 1등에게 특별장학금 지급 ('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성적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한 결과, 상당수의 교직원 자녀 및 고소득층 자녀가 특별장학생으로 선발 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

- ○○고등학교는 동일 학교 교사의 자녀인 김○○학생을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08. ~ '10. 동안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특별장학금 379만원을 지급, 해당 교사 역시 학비보조수당 379만원을 중복 수령 ('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등학교는 백○○학생이 경제적으로 여유(건보료 약 20만원 납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이라는 이유로 '11년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별장학금 지급기준인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기준을 형식적으로 마련 하여 운영

- ○○교육청의 경우 특별장학금 중 특기활동분야에는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의사, 한의사 및 공무원 자녀가 특기활동분야 특별장학생으로 선발('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교육청의 경우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녀 6명을 '11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 학비보조수당 중복 수령 문제 야기('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등학교는 특별장학생 선발 시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성적우수 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외부장학생의 경우 **구체적 기준 없이 임의로 추천되는 사례 빈발**

- 외부장학생은 대부분 구체적 기준 없이 추천 요청, 장학생선발위원회 역시 **선발기준에 대한 세부 논의 없이** 추천자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여 장학생 추천**

■ ○○교육청은 '성적이 양호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의 추천을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성적우수인 A가 아닌 성적우수만으로 추천된 B를 선정('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선발기준과 상관없이 성적순으로 장학생 추천**하거나 성적순으로 작성된 **장학생 서열명부에 따라 추천**

■ ○○고등학교는 ○○장학회로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의 추천을 의뢰받았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지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만으로 학생을 추천 ('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장학생 선발

○ 일부 학교의 경우 추천된 학생이 장학생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형식적인 절차로 장학생 선정**

- 장학생 추천 시 **1인의 학생만을 추천하여 가부로 결정**하거나 장학생으로 추천된 복수의 학생 중 **임의대로 1인을 선정**

■ ○○고등학교는 ○○재단 등 4건의 외부장학생 추천 시 1인의 학생만을 장학생으로 추천, 모든 위원의 동의하에 해당 학생을 장학생으로 결정('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등학교는 ○○기업체 장학생 추천 관련 회의록 작성 시 학년별로 추천된 3인 중 1인을 선정한 이유 등을 작성하지 않음('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장학생선발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선발 시 관련 **회의록 자체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 ○○고등학교는 장학생선발위원회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였다고 하나 특별장학생 및 외부장학생과 관련한 회의록이 일체 없음('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여자고등학교는 '08.~'10.12.까지 입학장학금, ○○장학금 등 각종 외부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 추천 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학생을 추천('10.12월 교육청 감사결과)

○ 장학생 선정을 위한 **추천서식 및 참고자료 미비로 충분한 심의에 어려움** 야기

- 특별장학생 선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장학생 추천 시 별도의 **추천서 양식이 없어** 공문으로 학생명단만 통보하거나
- 추천 대상자의 성적, 경제적 여건 등 **장학생으로의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없이 추천**

■ ○○교육청은 특별장학생 선발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참고자료 없이 장학생 선발('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 선 방 안 】

☐ 장학생 선발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특별장학생 및 외부장학생 선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 특별장학금의 제도도입 취지에 맞추어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기부자의 추천기준 없이 외부장학생 추천을 의뢰받는 경우 구체적인 추천기준 마련 후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 마련
 - 학교 장학생 선발 시 복수학생을 추천하여 선발, 장학생 추천이유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의무, 장학생 추천서식 보완 등

※ 조례 등 관련 지침에 반영

1-2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

【 문제 점 】

교육청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운영

-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 소속 공무원만으로 위원 구성**
- 9개 교육청 중 **1개 교육청만이** 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장학생 선발

【9개 시도교육청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 구분 | 규정(조례) | 운영 |
|--------------------|--------|--------|
| 위원회 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 2개 교육청 | 8개 교육청 |
| 학식과 덕망 있는 외부위원을 포함 | 7개 교육청 | 1개 교육청 |

※ 특별장학금 미지급 : 5개 교육청,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미 구성 : 2개 교육청

- 외부장학생 추천의 경우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악용하여 **동일 과 직원으로** 위원을 구성 하기도 함

【○○교육청의 '10년도 외부장학생 추천 관련 위원 구성 현황】

| 외부기관 | 장학금 혜택 | 위원 구성 |
|--------|--------------------------------|------------------------|
| ○○학술재단 | 120만원 현금 지원 | 중등교육과 과장 및 해당과 직원 3명 |
| ○○사업단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공납금 일체 (약 180만원/년) | 중등교육과 과장 및 해당과 직원 3명 |
| ○○메트로 | 240만원 현금 지원 | 교육과정기획과 과장 및 해당과 직원 3명 |
| ○○시의사회 | 120만원 현금 지원 | 중등교육과 과장 및 해당과 직원 3명 |

장학생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장학생 선발심사

-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추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이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을 그대로 선정

■ ○○교육청은 특별장학생 추천기준을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규정, 특히 부모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교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그대로 선정 (‘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교육청은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은 장학금 이중수혜 등 결격사유 대상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정하도록 내부규정 마련**

■ ○○교육청은 학교장이 추천한 장학생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정한다는 내부지침 마련하여 운영 (‘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장학생 선발 인원수만큼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후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가부만을 결정, 추천된 학생을 모두 장학생으로 선발**

■ ○○교육청은 관내 학교 수만큼 특별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한 후 학교별 1명의 장학생을 추천받아 가부형식으로 심사, 추천된 학생 모두를 장학생으로 선발 (‘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일부 교육청은 사전에 학교별로 인원 수 할당,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심의 없이** 학교에서 선정한 자에게 **특별장학금 지급**

- 대부분의 교육청은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서면심사로 대체 운영**

【9개 시도교육청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구분 | 집합심사 | 서면심사 | 비고 |
|--------|------------|------------|--------------------------------------|
| 교육청 개수 | 2개 교육청 22% | 7개 교육청 78% | ※ 특별장학금 미지급(5곳),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미 구성(2곳) |

- 서면심사를 위한 **심사참고 자료**가 대부분 불충분하며 일부 교육청은 **심사위원의 서면심사 결과표가 모두 동일**

■ ○○교육청은 ○○장학회 외 4건의 외부장학생 추천 서면심사 시 위원별 서면심사 결과표가 모두 동일 (‘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 선 방 안 】

☐ 교육청 장학사심사위원회 위원구성·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장학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반드시 외부위원 포함
 - 단, 수시로 요청되는 외부장학생 추천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원구성 가능하나 동일 과 직원 만으로의 구성은 지양

- 장학사심사위원회 심사는 원칙적으로 집합심사를 하되 외부장학생 추천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심사 가능
 - 내실 있는 장학사 심사를 위해 심사참고 자료 사전 배포, 회의록 작성 및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등

※ 조례 등 관련 지침에 반영

2. 장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

【 문제 점 】

장학생 명부관리 부실로 장학금 중복수혜 야기

○ 각종 장학금의 장학생 명부관리 부실로 장학금 중복수혜 발생

- 장학생 명부 관리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장학생 대장 등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실정
- 장학생 선발규정 등에 의해 같은 목적의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부관리 부실로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어려움 및 중복수혜 야기

- ○○고등학교는 '11년도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3명의 학생을 중복 추천함으로써 동 학생들에게 2곳 이상의 장학금을 중복 지급('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등학교는 장학생 선발 업무 소홀로 '08년도 8명, '09년도 14명, '10년도 10명의 학생에게 2~4곳의 장학금 중복 지급('10.12월 교육청 감사결과)
- ○○고등학교는 '09년도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최○○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 ○○교과서 장학금, ○○군 교육발전 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등을 중복 지급 ('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외부장학생 추천 등 장학업무 소극적 처리

○ 업무가중 등으로 장학생 추천 등의 장학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

-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청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을 의뢰받아도 해당 조건의 학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원회 협의 없이 장학생 미 추천

- ○○진흥원이 시도교육청에 학교장 추천인원을 배정하여 외부장학생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16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은 학교 추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배정인원수 보다 적은 수의 학생만 추천('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고등학교는 ○○재단으로부터 외부장학생 추천을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건의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장학생선발위원회 회의도 없이 장학생을 추천하지 않음('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교육청의 경우 외부장학생 전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을 통해 추천의뢰 된 장학생 추천 역시 대부분 학교에서 추천된 명단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

- ○○교육청은 외부장학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외부장학금 규모가 너무 커서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함('11.9월 ○○교육청 담당자 의견청취)
- ○○교육청의 경우 ○○재단의 장학생 추천 시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에 대한 자체 심사(검증)없이 학교에서 제출한 명단 그대로 해당 재단에 제출('11.9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해당 재단은 장학생 선발 기준을 교육청에 제공하였으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장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장학금 지급

장학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 외부장학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이 부실한 실정

-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외부장학금 관련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시도교육청 역시 해당 장학생 추천과 관련하여 현황파악 및 **지도점검이 전무한 실정**
- 특히,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 직접 지급받는 외부장학금은 2010년도 전체 1,339억원 중 1,085억원으로 81%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관리 전무**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2008년 ~ 2010년)】

(단위: 천만원)

| 구분 | 2009 | | 2010 | |
|---------------------|---------------|-----|---------------|-----|
| 시도교육청을 통한 외부장학금 | 2,101 | 17% | 2,538 | 19% |
|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은 외부장학금 | 10,357 | 83% | 10,853 | 81% |
| 합 계 | 12,458 | | 13,391 | |

【 개 선 방 안 】

장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

○ 각종 장학생 명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특별장학생 및 외부장학생의 명부 작성방법, 보관기간, 의무화 등 기준 마련

※ 장기적으로는 나이스(NEIS) 교무업무에 장학생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장학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 마련

- 특별장학생 선발, 외부장학생 추천 등의 장학업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학교의 외부장학생 현황 보고의무 및 교육청의 현황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 조례 등 관련 지침에 반영